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1,219,868	17,136,596
일반회계	504,147,308	15,124,419
특별회계	67,072,560	2,012,177
공기업특별회계	29,464,166	883,92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464,166	883,925
기타특별회계	37,608,394	1,128,252
수질개선 특별회계	12,506,557	375,197
주택사업 특별회계	6,155,616	184,668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83,575	23,507
자활기금 특별회계	2,197,020	65,911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3,338,079	400,142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27,883	18,836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79,544	8,386
기반시설 특별회계	67,722	2,0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652,398	49,57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8,137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한도액은 19,400,000천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7,136,596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